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 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2년 이후 개최예정인 2개 국제행사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주요 국제행사로 추가하고, 1개 주요 국제행사의 명칭을 현행화하는 한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국제행사 배분금액 잔액에 대한 반납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요 국제행사 추가(안 별표2)

‘2022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등 2개 국제행사를 주요 국제행사로 추가하고, 기존의 ‘2020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총회’를 ‘2021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총회’로 명칭을 현행화

나. 국제행사 배분액 반납절차 마련(안 별표2)

주요 국제행사 조직위원회로 배분한 수익금에 잔액이 발생한 경우 한국옥외광고센터로 반납하도록 하고, 해당 잔액은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배분하여 옥외광고산업 진흥 등을 위해 사용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중 “2020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총회”를 “2021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총회”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3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2022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라.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바. 제1호에 따른 주요 국제행사가 종료된 후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라 각 국제행사의 조직위원회에 배분한 금액에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조직위원회는 그 잔액을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반납하며, 해당 잔액은 나목 2)의 규정을 준용하여 법 제11조의4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배분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의안 소관 부서명 >

연 락 처	(044) 205 - 3541